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하여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급식지원의 대상(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등
- 급식 지원방법, 신청 절차 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을 통한 지원 등
- 대상자 및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5조)
- 급식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아동급식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아동 급식지원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학교급식법」
- 예산조치 : 2018년 예산에 1,853,491천원 반영되었음
(도비 : 644,848천원, 시비 : 1,208,643천원)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에 대한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